

[일련번호 : 68]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보고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연도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의거 발주자가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된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처리실적 보고서(계산서 등 실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해당 연도 중 준공되는 경우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위 보고서의 제출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건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폐기물법」 상의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를 정보관리체계(올바로 시스템)에 제출 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내역

연번	기간	건명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미이행 내역
1	'23.3.10.~ '23.12.12.	2023년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장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2,028.84톤)
2	'24.3.6.~ '24.12.4.	2024년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토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장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2,184.18톤)
3	'24.4.19.~ '24.11.27.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실적 미보고(임시저장 상태) (시스템 확인 인계량 2666.61톤)
4	'23.3.10.~ '23.12.12.	2023년 하수관로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장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4,056.12톤)
5	'23.3.2.~ '23.12.20.	2023년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18,658.77톤)
6	'23.3.20.~ '23.12.8.	2023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준설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장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821.67톤)

7	'23.11.18.~ '24.6.26.	안양천 호안블록정비공사(4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 632.91톤)
8	'23.12.08.~ '24.6.7.	안양천 호안블록정비공사(5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 344.76톤)
9	'25.3.31.~ '25.9.23.	목4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실적 미보고 (시스템 확인 인계량 1,274.73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공사·용역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행여부를 준공검사 시 철저히 확인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